

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·열람 일시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기관명·단체명		설립연도 년 월 일	
	대표자명		전화번호	
	주소 또는 소재지			
	인터넷 홈페이지 주소			
인력양성 분야 (주요 과정명 3개 이내)	1.			
	2.			
	3.			

「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1부 2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1부 3.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1부 4.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5.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연구실적(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